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회 구성에 지방협의회 추천인사 포함〉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24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0.
3. 회부연월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3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④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⑦ 제4항제2호 및 제3호----- -----. ⑧ ~ ⑪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 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 다.
---	---

현행법은 제10조의3¹⁾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²⁾에

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 ⑭ (생략)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³⁾.

동 위원회의 구성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12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 ⑮ (생략)

3)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략)

4)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⑪ (생략)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⁵⁾제1호(시·도지사) 및 제3호(시장·군수·구청장)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⁶⁾하는 등 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5)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6)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 ⑪ (생략)

이에 더하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는 실증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 적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⁷⁾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실제로 최근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⁸⁾을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제도적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행정절차 단계에

7)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 사례 현황(2019~2025년)

연번	과제명	승인일	진행상황	규제법령(조례)	규제개선 여부
1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19.2.11	종료	(서울) 도시계획 조례	완료
2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 디지털사이니지	'19.10.1.	종료	(서울, 경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완료
3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20.4.27.	종료	(서울, 경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완료
4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로드시스템)	'23.3.30	진행중	(제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미완료
5	LPG 충전소 내 배나둠 이온전지 ESS 연계 전자 충전소 실증	'24.3.29.	진행중	의왕시 건축 조례	미완료
6	전기택시 승강장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24.3.29.	진행중	(서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미완료
7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24.10.23.	진행중	(서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미완료
8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25.3.31	진행중	(서울 중구) 가스 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미완료
9	소형화물차 및 소형승합차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25.9.25.	진행중	(서울, 세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미완료

자료 : 산업통상부

8)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 시행 2026. 6. 3.>

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바 있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의 방향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동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심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산업 특성, 인프라 및 안전 여건 등에 관한 지방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인식이 사전에 공유·조율됨으로써, 이후 규제 적용 예외나 인허가 과정에서 협조 또한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의 부칙⁹⁾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정된 위원 구성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음.

9)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위원회를 일정한 정원과 구성 비율을 전제로 운영¹⁰⁾¹¹⁾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면서도 위원 총원에 관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존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전문가 등)의 수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위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협의체 추천 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의 균형과 전문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⑪ (생략)

1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현황 (출처: 산업통상부)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 (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

○ (당연직) 정부위원 12명 (재경부·과기부·행안부 등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 (위촉직) 민간위원 12명 (임기 2년, 산업부장관 위촉)

특히, 별도의 정원 조정 없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할 경우 기존 민간위원의 구성과 역할에 일정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산업융합 정책 및 규제특례 분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산업 간 융합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민간 전문가 위원 수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 정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57